

○재단 규정 제9호 임원인사에 관한 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 9 호  
임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임원으로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단 규정 제10호 사무국직원 인사 및 채용·보수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 10 호  
사무국직원 인사 및 채용·보수 규정

제6조 (채용인사심사) '채용인사위원회'를 6명(외부인사 1/2 포함)으로 구성하여 채용인사규정을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문(나주지역신문 위주)·방송이나 인터넷(나주시청 및 재단홈페이지) 등에 공개 채용의 광고를 하여 공고하고, 응시자의 채용접수 후 '채용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다면 평가를 통해 채용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합한 사람을 이사장이 채용한다.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직원으로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 (보수)**

④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매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단, 성과급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재단 규정 제12호 외래강사 운영 규정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규정 제 12 호  
외래강사 운영 규정

**제5조 (강사 모집)** 강사의 모집은 재단 사업별 계획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 성격 상 부득이한 경우는 내부 계획에 의거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강사 채용 심의)** ① 강사의 채용 결정은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심의과정을 거쳐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 채용 심의위원회 구성은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강사 계약)** ① 강사의 계약은 재단 사업별 계획에 따른 강사채용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

② 강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시행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사업명 : ○ ○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주최하는 '○ ○ ○' 운영 계약과 관련, 당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계약에서부터 사업 운용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사항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자에게 위법 부당한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제공 포함)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일 :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 ○ ○ ○

성명 : 대표자 ○ ○ ○ (인)

(재)나주교육진흥재단 귀하